

의안 번호	2601	【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제 출 일 자 : 2026. 8. 21.(금)
-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6. 8. 21.(금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6. 9. 3.(목)

2. 제안이유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생활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(안 제3조)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계획 수립 규정(안 제4조)
-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 -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, 운영,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 등
-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 - 공영주차장,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
-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수의계약 대부 및 임대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)
- 충전시설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-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·교육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9조)

4. 근거법규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
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- 주요 내용으로는

목적,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계획 수립,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,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, 구청장의 책무, 충전시설에 관한 사항, 보급확대를 위한 홍보·교육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-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
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등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【근거법규】
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8조의2(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·공급·판매 또는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
2.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·생산을 위한 연구·조사
3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, 방법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의3(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방향 충전(충전과 방전을 말한다)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.

제11조의3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

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제12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